

부속서 6-라
한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주해

1. 아래 약속 리스트는 (이하 “이 양허표” 라 한다) 제 6.7 조에 따라 자유화된 서비스분야와 유보로써 그러한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 제한을 나타낸다. 이 양허표는 다음의 요소로 구성된다.

(가) 첫 번째 열은 한국에 의하여 약속이 행해지는 분야 또는 하위 분야와, 유보가 적용되는 자유화의 범위를 나타낸다.

(나) 두 번째 열은 제 6.5 조에 대하여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유보를 말한다.

(다) 세 번째 열은 제 6.3 조에 대하여 첫 번째 열에서 제시된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유보를 말한다. 그리고

(라) 네 번째 열은 제 6.5 조 및 제 6.3 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추가적 약속을 말한다.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나 이 양허표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 또는 하위 분야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약속되지 않는다.

2. 제 6.5 조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가 제 6.3 조와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조치는 제 6.5 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러한 경우 그러한 기재는 제 6.3 조에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 이 양허표에는 네 가지 다른 공급형태가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가) “1) 국경간 공급”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가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으로 이해된다.

(나) “2) 해외소비”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나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으로 이해된다.

(다) “3) 상업적 주재”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다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 이해된다.

(라) “4) 자연인의 주재” 공급형태는 제 6.1 조 서비스무역 라호에 따른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임시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으로써 사업을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입국 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4. 한국은 한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추가자유화 요소’ 열에 기재된 래칫(FL) 또는 MFN 은 서비스 공급형태 1, 2 및 3 에만 적용되며,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서비스 공급형태 4)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 수평적 양허 | | | | |
| <p>CPC (UN 잠정 중앙상품분류: 통계문서시리즈 M No.77, 국제 경제사회국, UN 통계사무소, 뉴욕, 1991) 코드 번호 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 상의 해당 서비스 하위 분야가 주어진 CPC 코드 번호에 따라 분류된 서비스 하위 분야의 일부 또는 일부들만을 포함하는 것을 표시한다.</p> <p>“약속 안함*”이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p> | | | | |
|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 | <p>3) 인도네시아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및 항공과 같은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신규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p> | <p>3) 토지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p> <p>(ii)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의 합법적 사업목적으로 허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 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령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 해당 법령에 규정된 토지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 <p>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한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 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 받음.</p>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 | | <p>사용되는 토지</p> <p>세계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자격은 해당 법에 따라 한국에 설립된 기업에 제한될 수 있음.</p> <p>연구 및 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p> <p>4) 토지취득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p> <p>세계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 자격은 관련법상의 거주자에 제한될 수 있음.</p> | |
|--|--|--|---|--|

다음의 정의는 투명성 목적으로 규정한다.

1.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 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그리고
2. “지점”은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 사무소로 정의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 사무소는 인도네시아 영역 내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 | | | |
| <p>1. 사업 서비스</p> <p>A. 전문직 서비스</p> <p>a. 법률 서비스 (CPC 861*)</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지역에 관한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함.</p> <p>(i) 법원 및 그 밖의 정부 기관에서의 사법 절차 또는 법적 절차를 위한 대리 및 그러한 절차를 위한 법적 문서의 준비</p> <p>(ii) 공증 증서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대리</p> <p>(iii) 노동 분야 자문 서비스 또는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식</p> |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형태로만 가능.</p> <p>한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일년에 최소 180 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것이 요구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i) 단기출장근무 (fly-in, fly-out) 형태로 일시적으로 외국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한국 체류 기간이 1년에 90일 미만인 경우, 외국 변호사는 한국에 외국법 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도 국제중재 사건에 관하여 일시적 업무 수행 및 대리를 할 수 있음.</p> <p>“국제중재사건”이란 대한민국을 중재지로 하고, 대한민국 외 국가의 법령, 대한민국과 외국 간 체결된 조약, 대한민국 외 국가들 간의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관습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민사·상사의 중재 사건을 말함.</p> <p>(ii) 회사 이름의 사용은 허용됨. 다만, 한글로 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라는 명칭과 함께 사용되어야</p>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p>재산권, 광업권 또는 한국의 정부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그리고</p> <p>(iv) 한국 국민이 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의 가족관계 또는 상속에 관한 법률사건들에 관한 행위</p> | | | | <p>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 주석

다음 정보는 오직 투명성 목적으로만 규정함.

1. 한국에서 외국법 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하고, 그 관할국의 법조계에서 유효하고 적정하게 종사하고 있어야 함.
2.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함. 해당 대표 사무소는 법무부장관이 승인한 외국법자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됨. 해당 대표 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해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 사무소의 대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포함하여 최소 5년 동안 법률실무에 종사했어야 함.
3. 대표 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주재는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유지해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함.
4. 이 분야의 약속의 목적상, 인도네시아의 관련 법률에 따라 조직되고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법무회사(로펌)만이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음.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가의 지점, 현지 사무소, 자회사 또는 합작기업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법무회사(로펌)의 어떠한 종류의 종속적 또는 의존적 법적 실체도 한국에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b.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CPC 862)</p> | | <p>1)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2) 감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p> <p>3)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만 허용됨.</p> <p>감사반 및 회계 법인(유한회사)의 공인회계사만 감사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p> <p>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2년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p> | <p>1)2)3)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 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자격을 취득 할 수 있음. 한국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 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p> <p>- 외국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에 대한 자문, 공인회계사 연수, 감사 기법전수, 그리고 정보 교환</p>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 세무 서비스 (CPC 863) | | 1)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2) 세무조정 서비스 및 세무대리 서비스에 대하여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세무 조정반, 그리고 세무대리법인(유한회사)만이 허용됨. 세무조정반 및 세무대리법인(유한 회사)의 세무사만이 세무조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허용됨.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시험 통과 후 한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d. 건축 서비스 (CPC 8671) | | 1) 한국법상 자격 있는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을 통하여 외국 건축사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2)4) 한국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의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허용됨. 5년의 전문 경력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그 자격이 한국 건축사와 동등한 전문직으로 인정되는 외국 건축사 자격자는 한국에서 시행되는 인턴 개발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도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이들은 건축사 자격시험의 다음 두 과목에 합격함으로써 한국 건축사 자격 취득이 가능함. (a) 건축설계 I, 그리고 (b) 건축설계 II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g.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i. 수의료 서비스 (CPC 932)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B. <u>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 | | | |
| a.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기타 (CPC 845, 849)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 <u>연구개발 서비스</u>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한국의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 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한국 기업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전에 허가 또는 동의를 획득해야 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D. <u>부동산 서비스</u></p> <p>중개 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p> <p>감정평가 서비스 (CPC 82201*, 82202*)</p> <p>토지 가격 책정과 수용에 대한 보상과 같은 정부의 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감정평가 서비스는 제외함.</p> | | <p>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E. <u>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u></p> <p>a. 선박 관련 (CPC 83103)</p> | <p>FL MFN</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 FL MFN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 퍼센트 미만의 합작투자에 한정하여 허용.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그 밖의 운송장비 관련 (CPC 83101, 83105*) ¹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기타 개인 또는 가정 용품 관련 리스 또는 임대 서비스 (CPC 832)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¹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미만의 승합차로 한정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u>그 밖의 사업 서비스</u> a. 광고 서비스 (CPC 871)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 (CPC 864)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프로젝트 경영 서비스 (CPC 86601)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성분과 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 ²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² 86761*: CPC 86761 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e. 물리적 성질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2)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기술적 진단 서비스 (CPC 86764)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e. 통합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³ |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1*, 8812*)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f. 가금류 감별 서비스 (CPC 8811*, 8812*)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³ 86763*, 86769*: CPC 86763, 86769 중 전자 제품의 검사 및 분석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f. 항공에 의한 산불진화 및 병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g.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2*)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h. 광업 부수 서비스 (CPC 883)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다만, 88411, 88450, 88442 및 88493 제외)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1. 보안 서비스 (CPC 873*):</p> <p>보안 자문 서비스 (CPC 87302), 경보 모니터링 서비스 (CPC 87303), 장갑차 서비스 (87304), 경비 서비스 (CPC 87305), 그리고 그 밖의 보안 서비스 (CPC 87309) 포함</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만이 한국 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p> <p>한국에서는 다음 5 가지 종류의 경비 서비스만이 허용됨:</p> <p>(a) 시설경비: 보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설립체와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리고 혼잡과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p> <p>(b) 호송경비: 현금, 증권, 귀금속, 상품, 및 그 밖의 물품의 이송과 관련된 도난 및 화재와 같은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p> <p>(c) 신변보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가해지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러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p> <p>(d) 기계경비: 경비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설립체에 설치된 장비 및 그러한 서비스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설립체 외의 장소에 설치된 통제시설 장비에 의하여 감지 및 전송되는 정보 수신을 통하여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그리고</p> <p>(e) 특수경비: 시행령에 의하여 규정된 공항과 같은 핵심 국가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k. 직업 소개 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직업 소개는 제외함.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공급자는 「상법」에 따른 회사 형태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직업 소개 서비스에 대한 투명성 목적의 주석 1.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결정되고 공표된 서비스 요금에 대한 규칙을 준수함. 2. 회사는 5천만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됨. 공급자가 추가로 지점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점 사업소당 2천만원 씩 총 납입자본금이 가산됨. | | |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 서비스</p> <p>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p> <p>지각조사 서비스 (CPC 86752)</p> |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지표조사 서비스 (CPC 86753*)</p> <p>지적 측량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함.</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지도제작 서비스 (CPC 86754*)</p> <p>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함.</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n.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p> | <p>FL MFN</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o. 빌딩 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p. 사진 서비스 (CPC 875) |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q. 포장 서비스 (CPC 876)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r. 인쇄 (CPC 88442*) ⁴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r. 출판 (CPC 88442*) 신문 및 정기 간행물 출판 서비스는 제외함.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⁴ 88442*: CPC 88442 중 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s. 국제회의 대행 서비스 (CPC 87909*)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s. 속기 서비스 (CPC 87909*)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t. 전화 응대 서비스 (CPC 87903)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t. 복제 서비스 (CPC 87904)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t. 번역 및 통역 서비스 (CPC 87905)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t.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p> <p>B. <u>쿠리어 서비스</u></p> <p>특급배달 서비스⁵를 포함하는 쿠리어 서비스 (CPC 7512*)</p> <p>「우편법」에 따라 한국 우정당국이 배타적 권리⁶를 가지는 편지의 수집, 처리 및 배달 서비스는 제외함.⁷</p> <p>한국 우정당국의 배타적 권리는 우편망 및 그 운영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p> <p>이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p> | | <p>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 운송형태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국내 쿠리어 공급을 위한 화물운송업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쿠리어 서비스 공급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피인수자가 보유한 면허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 하에 영업을 영위하는 한, 신규 화물운송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p> <p>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서비스의 제공은 항공 및 해로 운송형태로 제한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⁵ “특급배달서비스”란 신속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서, 인쇄물, 소포,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의 수집, 운송 및 배달로서, 서비스 공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그 품목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⁶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하는 차량 총수 결정과 우체국에 대한 차량 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⁷ 그러나 「우편법 시행령」 제 3 조는 민간 쿠리어 사업자가 다음을 포함한 상업서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않은 서류 또는 송장, b) 국제 서류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이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기를 보유한 배달 사업자에 대한 항공 운항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p> | | |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C. <u>통신 서비스</u></p> <p>a. 음성전화 서비스</p> <p>b. 패킷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p> <p>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서비스</p> <p>d. 텔렉스 서비스</p> <p>e. 전신 서비스</p> <p>f. 팩시밀리 서비스</p> <p>g. 민간전용회선 서비스</p> <p>o. 기타</p> <p>디지털 셀룰러 서비스</p> <p>무선호출 서비스</p> | | <p>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한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을 조건으로 함.</p> <p>2) 제한 없음.</p> <p>3)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의 대상자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한정함.</p> <p>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외국인은 무선국 허가를 취득하거나 보유할 수 없음.</p> <p>기간통신사업 허가는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⁸ 모두가 합하여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부여되거나 그러한 법인에 의하여 보유되지 않음.</p> <p>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모두가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⁹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9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p> <p>외국정부,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의제외국인은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음.</p> <p>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⁸ “의제외국인”이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한국의 관련 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0 퍼센트(그 최대 주주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인 경우 15 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⁹ “기간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한 공급자를 말한다. “별정통신사업자”란 전송설비를 소유하지 않고(그러나 스위치, 라우터 또는 멀티플렉서는 소유할 수 있다)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송설비를 통하여 기간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전송설비”란 송신지점과 수신지점을 연결하는 유선 또는 무선전송설비(회선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CS(개인통신 서비스) TRS(주파수공용 통신 서비스) 무선 데이터 서비스 IAS(인터넷접속 서비스) PSTN(공중교환 전화망)과 연결된 VoIP(인터넷 전화)서비스 | | |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부가 서비스 ¹⁰ h. 전자메일 i. 음성메일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k. 전자적 데이터 교환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부가 가치 팩시밀리 서비스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 (거래 처리 포함) o. 기타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 ¹¹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 및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데이터 전송 서비스 공급이 허용됨 ¹² |

¹⁰ “부가 서비스”란 기간통신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 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¹¹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 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¹²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 서비스(음성전화, 텔렉스, 팩시밀리 서비스 및 전용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D. <u>시청각 서비스</u></p> <p>a.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p> <p>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는 제외함.</p> <p>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녹음)</p> |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3. 건설 서비스 (CPC 511-518)</p> | <p>FL MFN</p> | <p>1) CPC 5111 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CPC 5111 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4. 유통 서비스¹³</p> <p>A. 위탁 증개인 서비스 (CPC 621, 다만,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증개인 서비스는 제외)</p> | | <p>1) 의약품 및 의료상품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¹³ 다음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 (a) 총포, 도검 및 화약류의 거래
 - (b) 예술품 및 골동품, 그리고
 - (c) 다음의 개설 및 운영과 다음에서의 유통 서비스
 - (i) 지방 당국이 공영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축수산물 공영도매시장
 - (ii)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개설 및 운영하는 농수산물공판장, 그리고
 - (iii)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 및 운영하는 가축 시장
-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관세율할당의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B. 도매 서비스 (CPC 61111, 622*, 다만, 62211 중 곡물 도매업, 62223, 인삼 및 홍삼 도매업, 62229 중 곡분 및 62276 중 비료 도매업은 제외)</p> | |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 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다음의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 중고자동차 도매업 - 가스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p> <p>주요 기준: 합리적인 가격의 형성, 수급 균형을 위하여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질서 있는 상행위. 또한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주류 도매 유통업을 하는 인은 관련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함.</p> <p>보건복지부장관은 수입된 지정 한약재의 도매 유통에 대한 수급조절을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C. <u>소매 서비스</u> (CPC 61112, 61130, 61210, 613*(LPG 와 관련된 소매업 및 주유소 사업 제외), 631*(쌀, 인삼, 홍삼 제외), 632)</p> | | <p>1) 의약품, 의료상품, 기능성 식품 및 공급형태 3 상 제한 대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및 가스 연료에 대한 소매 서비스는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로 함.</p> <p>주요 기준: 기존 국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p> <p>전화 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됨.</p> <p>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 면허를 받은 자연인으로서 한국에 사무소를 개설한 자만이 안경사 또는 검안 영업에 종사할 수 있음.</p> <p>면허를 받은 안경사(안경사 또는 검안사)만이 영업을 위한 영업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안경사 1 인당 1 개의 영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p> <p>의약품 소매유통 서비스(한약재 유통 포함)를 공급하는 인은 약국을 1 개소만 설치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없음.</p> <p>지정된 담배소매인만이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 담배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최소한 50 미터를 유지해야 함. | |
| | |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D. 프랜차이즈 ¹⁴ (CPC 8929*)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p>※ 주석</p> <p>다음의 설명은 소매 서비스에 적용됨. 일반 공중에 대한 의약품의 직접 공급(약국)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하여 허가 받은 약사에 의해서만 허용됨.</p> | | | |

¹⁴ 프랜차이즈 서비스는 이 양허표의 도매 서비스 및 소매 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으로 한정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5. 교육 서비스¹⁵</p> <p>C. <u>고등교육 서비스</u>¹⁶ (CPC 923*)</p> <p>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정부 또는 공인평가 인정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 교육 서비스.</p> <p>다음은 제외함. (i) 보건의료 관련 고등교육 (ii) 유아·초등 및 중등 교원양성 고등교육 서비스 (iii) 법학 전문대학원, 그리고 (iv) 방송통신 대학 및 사이버 대학</p> | | <p>1) 약속 안함.</p> <p>2) 국내외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p> <p>3) -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학교 법인¹⁷만이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함(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¹⁸에서의 고등교육기관의 신설, 확장 또는 이전은 제한될 수 있음. - 대학(전문대학)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서의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은 외국공인인정기구의 인정을 취득하거나, 외국 정부의 인정 또는 추천을 획득한 외국 대학으로 한정함.</p>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 |

¹⁵ 모든 서비스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국에서 전문직 활동을 위한 입학, 등록 및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학위 인정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¹⁶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고등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된다.

¹⁷ “학교법인”이란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정규 교육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¹⁸ “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기타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됨. - 교육부장관은 총 학생 수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의 총수를 제한할 수 있음.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D. <u>성인교육 서비스</u>¹⁹ (CPC 924*)</p> <p>사립 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 서비스</p> <p>다음을 제외함.</p> <p>(i) 학력을 인정하거나, 국내외 학점,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거나 또는 이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p> <p>(ii) 「고용보험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신원법」에 따라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업훈련 서비스</p> <p>(iii) 방송을 통한 교육 서비스, 그리고</p> <p>(iv) 정부가 위임한 권한에 따라 기관이 제공 하는 직업훈련 서비스</p> | | <p>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 첨부 1에 기재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함. - 교육감은 학원수강료를 규율 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과 그 주변에서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될 수 있음.</p> <p>4)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보건 및 의료 관련 성인교육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성인대상 학원에 강사로 고용되는 외국인은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고, 한국에 거주해야 함.</p> | |

¹⁹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성인교육 서비스에 관한 첨부 1에 기재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6. 환경 서비스 | | | | |
| A. 폐수 서비스 폐수 처리 서비스 (CPC 9401*) ²⁰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산업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²¹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D. 기타 배기가스 정화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 시험 및 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²²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²⁰ 9401*: CPC 9401 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²¹ 9402*: CPC 9402 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한다.

²² 9406*, 9409*: CPC 9406 및 9409 중 환경 영향 평가 서비스만 해당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토질개선 및 지하수 정화 서비스 (CPC 9406*)</p> <p>환경자문 서비스 (CPC 9409*)</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금융 서비스에 대한 주해

1. 금융 분야는 기본적으로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의 카테고리에 따라 재분류됨. 그러므로 하위 분야의 순서는 GATS/SC/48/Suppl.3/Rev.1. 의 약속상의 하위분야와 다름.
2. 하위 분야의 기재사항은 오직 현존하는 국내 금융 서비스에만 적용됨.

7. 금융 서비스

모든 금융 서비스는 다음 규정에 따름.

1. 부속서 6-가(금융 서비스) 제 2 항 가호에 따른 건전성 사유로 한국은 모회사와 관련된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자금 요건, 영업 활동을 위한 영업 직원의 면허 및 승인을 포함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음.
2. 금융기관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그 밖의 영업활동을 결합할 수 없음.
3. 금융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및 소비자 이동을 통한 공급은 원화로 결제되지 않음.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 원화로 표시되고 결제된 거래만 다룰 수 있음.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된 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는 승인이 필요함.
4. 지점소유 자산은 한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국내 지점의 자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6. 금융기관의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7. 금융기관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
8. 파생상품을 포함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은 승인을 받아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A. <u>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p> <p>(i) 직접보험</p> <p>a) 생명보험 서비스</p> <p>상해보험과 건강보험 서비스를 포함함</p> <p>b) 손해보험 서비스</p> |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서비스</p> |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iii) 보험중개 및 대리 서비스 a) 보험중개 |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6-나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보험대리 |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iv) 보험 부수 서비스 : 하위 분야 a) 및 b)에만 적용됨 a) 손해사정 서비스 ²³ b) 보험계리 서비스 | | 1) 제한 없음. 2) 약속 안함. 3) 외국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²³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B. <u>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u></p> <p>다음의 하위 분야에만 적용됨.</p> <p>(i) 예금²⁴</p> <p>(ii) 대출²⁵</p> <p>(iii) 금융 리스</p> <p>(iv) 지급 및 송금</p> <p>(v) 보증 및 약정</p> |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본국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외국 금융기관(금융리스는 제외)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없이 은행 지분의 10 퍼센트까지(비금융 서비스 기관의 경우 4 퍼센트까지), 그리고 지방은행 지분의 15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²⁶</p> <p>인은 관련 당국의 특별한 인가 하에 은행 및 지방은행의 100 퍼센트까지 취득할 수 있음.</p> <p>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은 미화 500 만 달러 또는 자본금의 3 퍼센트 중 큰 금액임.</p> <p>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p> <p>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에 따름.</p> <p>카드론과 같은 수단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대출은 제한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 |

²⁴ 예금의 수취 또는 양도성 상품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발행에 의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인수하는 업무

²⁵ 융자 또는 어음할인을 통하여 은행이 대중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²⁶ “인” 및 “비금융 서비스 기관”은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 및 이자율과 같은 각종 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 | |
| (vi) 외환 서비스 ²⁷ (vii) 결제 및 청산 ²⁸ | | <p>양도성예금증서 만기는 30 일을 초과함.</p> <p>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요건이 적용됨. 선물 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p> <p>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p> <p>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p> <p>금융 리스, 신용 공여,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viii)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다음에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됨. |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본국에서도 동일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²⁷ 외환의 발행, 송금 및 추심 행위

²⁸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른 은행의 어음 및 수표에 대한 결제 및 청산 행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 | | | | |
|---|--|--|--|--|
| <p>a) 화폐시장 상품 (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p> <p>b) 외환</p> | | | | |
| <p>c) 금융파생상품 (선물 및 옵션 포함)</p> <p>d) 환율 및 이자율 상품(스왑 및 선도금리계약 포함)</p> <p>e) 양도성 증권</p> <p>f)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금피 포함)</p> | | | | |
| <p>(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p> <p>a) 증권발행</p> <p>b) 증권인수</p> <p>c) 증권모집</p> <p>d) 그 밖의 증권 관련 서비스</p> |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 기관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제가 허용됨.</p> <p>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p>(x) 자산 관리</p> <p>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p> <p>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p> <p>b) 모든 형태의 집합투자 운용</p> <p>c) 보관</p> <p>d) 신탁²⁹ (투자일임업포함)</p> |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 외의 업무에 종사 및 신탁업에 종사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승인(두 종류)이 요구됨.</p> <p>부동산 신탁 사업은 약속 안함.</p> <p>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xi) 신용정보 서비스</p> |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 퍼센트 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xii)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p> <p>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p> <p>a) 투자자문</p> |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 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설립의 최고 책임자는 한국에 주재해야 함.</p>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p> | |

²⁹ 수탁자가 위탁을 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 |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b) 신용평가 및 분석 |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 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회사가 해야 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p> <p>A. <u>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2, 6431*)</p> <p>다만, CPC 6431 중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p> |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B. <u>여행 알선 및 여행 대행 서비스</u></p> <p>여행 알선 서비스 및 여행 대행 서비스(CPC 7471)</p> |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C. <u>관광객 안내 서비스</u> (CPC 7472)</p> | <p>FL</p> <p>MFN</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제 4) 자연인의 주제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p> <p>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CPC 96191, 96192)</p> <p>뮤지컬, 연극,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과 같이 개인 아티스트나 그룹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B. 뉴스통신 서비스 (CPC 962)</p> | | <p>1)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는 연합 뉴스사와 같이 무선국 허가를 받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뉴스통신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한국에서 뉴스통신을 공급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뉴스통신사의 한국 내 지사 또는 지국의 설립은 기사취재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함.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사 또는 지국은 한국 내에서 뉴스통신을 배포할 수 없음.</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한국에서 뉴스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음. 가. 외국 정부 나. 외국인 다. 한국 국민이 아니거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인이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로</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뉴스통신사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최고선임임원)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고, 또한 연합뉴스사나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이사회 의 일원)이 될 수 없음. 가. 외국 국민, 또는 나. 한국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한국 국민</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 | <p>되어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라. 외국인이 25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다음에 해당하는 인은 무선국 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가. 외국 국민 나.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또는 다.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p> <p>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p>D. 기타 (CPC 964**) 게임 서비스</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p>11. 운송 서비스</p> <p>A. <u>해운 서비스</u>³⁰</p> <p>국제운송 (CPC 7211*, 7212*)</p> <p>연안 운송은 제외함.</p> | <p>FL MFN</p> | <p>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부정기선 및 그 밖의 국제해운: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한국 국적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설립</p> <p>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에 명시된 주식회사만이 허용됨.</p> <p>b)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p> <p>4) a) 선박승무원: 약속 안함. b) 항만 노무자: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p> <p>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항구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해상운송공급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선 2. 예선 지원 3.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4.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및 전기공급을 포함한 선박 운영에 필수적인 육상기반 운영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접안지 및 선박접안 서비스 |
| <p>주석</p> <p>관련 국내법상 연안 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양허표는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그 밖의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국내 연안 운송을 포함하지 않음. 한반도 전체 및(또는)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대륙붕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및(또는)</p> | | | | |

³⁰ 해운 서비스에 관한 첨부 2 를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그 부속도서상의 항구 또는 지점이 포함되고,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도 국내 연안 운송에 포함됨.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해운 부수 서비스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CPC 741*) | FL MFN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항만 내 창고업 (CPC 742*)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통관 서비스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해운대리업 서비스 (CPC 748*) ³¹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³¹ CPC 748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외국운송사업을 포함한다)을 주선하는 대리업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 ³²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CPC 748*) ³³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해운 중개(CPC 748*, 749*) ³⁴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선박 유지 및 보수 ³⁵ | FL MFN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에 명시된 모든 회사가 허용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선원 포함 선박 임대 서비스 (CPC 7213)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³² CPC 741 중 항만 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³³ CPC 748 중 주선인의 명의(계약상 외국주선인을 포함한다)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서비스

³⁴ 748*, 749*: CPC 748 및 749 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또는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³⁵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과 같은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예선 서비스 (CPC 7214) | FL MFN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CPC 745*) | FL MFN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업종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C. <u>항공 운송 서비스</u> 컴퓨터 예약 시스템 (CRS) 서비스 ³⁶ | FL MFN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³⁷ |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 FL MFN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³⁶ 제 6.1 조 컴퓨터 예약 시스템(CRS) 서비스의 정의에 따른다.

³⁷ 「항공사업법」 제 2 조제 30 호(항공운송총대리점업)에 정의된 서비스.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분야 또는 하위 분야 | 추가자유화 요소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
| E. <u>철도 운송 서비스</u> a. 여객 운송 (CPC 7111) b. 화물 운송 (CPC 7112)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 중인 노선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를 조건으로 함. 주요 기준: 철도 산업에서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c. 철도 유지 및 보수 (CPC 8868 의 일부) ³⁸ d.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 (CPC 741, CPC 7113 의 일부) ³⁹ |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³⁸ 철도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사유 철도 설비에만 적용된다.

³⁹ 철도 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은 사유 철도 설비에만 적용된다.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p>F. 도로 운송 서비스</p> <p>연안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 운송 (CPC 71233*)</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만 부여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로 한정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G. 파이프라인 운송 (CPC 7131*)</p> <p>오직 석유제품 운송에 한정. 다만, LPG 운송은 제외함.</p> | <p>FL MFN</p> |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H. 모든 운송 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p> <p>b. 항만구역 외의 보관 및 창고업 (CPC 742*)</p> <p>농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서비스는 제외함.</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공급형태 : 1) 국경 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 | | | | |
|--|--|--|---|--|
| <p>I. 그 밖의 운송 서비스</p> <p>복합 운송 서비스</p> <p>철도 화물 주선⁴⁰</p> |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p>12. 그 밖의 서비스</p> <p>b. 이발 및 그 밖의 미용 서비스 (CPC 9702)</p> |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와 부록 6-나-1 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⁴⁰ “철도 화물 주선”이란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의 철도화물 운송계약, 화물 하역 및 배달이 포함된다.

첨부 1: 교육 서비스

1. 고등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 전문대학(기능대학은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2년부터 3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 나.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4년부터 6년까지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 다. 산업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 라. 기술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인력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2년의 교과과정을 제공하고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고등교육기관
- 마. 사내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근로자를 교육하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 또는 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2. 성인교육기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10명 이상에게 평생교육 또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과목을 교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교육시설을 말한다. 학교, 도서관, 박물관, 직원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운전학원은 제외된다.
 - 1) 산업기본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섬유 및 의복,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업 및 임업, 해양 산업, 에너지, 공예, 환경, 교통, 안전관리
 - 2)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 및 미용 관리, 식품 및 음료,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 3) 컴퓨터: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처리, 인터넷, 컴퓨터, 게임
 - 4) 간호보조: 간호조무사
 - 5) 문화 및 관광: 출판, 영상 및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상품, 관광
 - 6) 국제: 성인대상 어학, 번역, 통역
 - 7) 경영 및 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회계,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및 속독
 - 8)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공무원시험
 - 9) 기예: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회화, 무용, 웅변, 모델, 만화, 바둑, 연극, 꽃꽂이, 꽃공예
- 나.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인가, 등록, 또는 신고가 된 시설을 말한다. 평생성인교육시설은 성인을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사업장, 비정부기구, 학교, 그리고 언론기관에 부설된 평생교육시설과 지식 및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첨부 2: 해운 서비스

1. 국제해운, 3.b):

“국제해운 서비스 공급을 위한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란 다른 쪽 당사국의 국제해운 서비스 공급자가 지점을 설립하고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해상화물취급 서비스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 하역회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활동으로서 항만인력단이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항만노무자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대상이 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한다.

- 선박으로의/선박으로부터의 화물 선적/하역
- 화물의 고정/분리
- 선적 전 또는 하역 후 화물의 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 서비스

이 서비스가 서비스 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의 일상적인 보조 활동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입, 수출 또는 화물의 통운송과 관련하여 다른 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4. 컨테이너 스테이션 및 창고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입/적출, 수리 및 선적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항만 지역 내에 보관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5. 해운대리업 서비스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인으로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견적부터 송장 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그리고 회사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준비, 그리고 사업정보의 제공
- 필요한 때, 선박 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한 업무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 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적자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편성 및 점검하는 활동

7. 검수, 검량 및 감정 서비스

- 검수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경우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인도 및 인수를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검량 서비스: 화물을 선적 및 하역하는 경우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것으로 구성된 활동
- 감정 서비스: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검증, 검사 및 조사로 구성된 활동